

제3장 이용계약 및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이용계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친척 등 법적 보호자(이하 '보호자')와 체결할 수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1)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확인 가능
 - 2) 서비스 개시 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 2부를 작성·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계약서에 별도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대상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12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3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알 권리
 - 3) 대상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대상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 【계약의 해지】

1. 계약 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 한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01)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원	2,331,200원	1,528,200 원	1,409,700 원	1,208,900 원	676,32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60분 이상	25,320 원	180분 이상	57,020 원
90분 이상	34,120 원	210분 이상	63,530 원
120분 이상	43,430 원	240분 이상	70,080 원
150분 이상	50,640 원	270분 이상	70,080 원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 6 %